

소액수의 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전기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 위치 :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2947번지

-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라. 용역금액 : 금89,561,000원(추정가격 81,419,091원 + 부가세 8,141,909원)

마. 기초금액 : 금89,561,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며, 총액 입찰로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 다. 입찰방법 : 본 견적서의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요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업(1종))[1106]으로 등록한 업체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간 : 2026. 9. 22. 10:00 ~ 2026. 9.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 11:00 우리 군 입찰집행관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무응찰,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실시 여부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찰 결과를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 해당없음

6.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우리 군 미래공간과(☎053-668-8433)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첨합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 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군 회계과(☎053-668-2693) 및 미래공간

과(☎053-668-8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임)재무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